

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9. 28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치유농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9. 28. ~ 10. 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○월 ○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 | 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치유농업"이란 농업·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2. "치유농업 서비스"란 심리적·사회적·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) 담양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
3.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
4.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
5. 치유농업 물적·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·단체 네트워크 구축

6.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육성 사업)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 연구개발
2.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
3. 치유농업 프로그램·기술 개발 및 보급
4.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
5.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·안전·위생 관리
6.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
7.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치유농업 사업자)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.

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) 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, 치유농업자원·치유농업시설·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

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 등)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